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중 홍보 및 전국 편의점 2,500여 개소 현장 지도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23년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1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등 조치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종운 (044-202-7528)
			주무관	강승훈 (044-202-7531)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하는

# 4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2023.12.4.~12.8.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편의점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지원합니다.



## 4대 기초노동질서 함께 지켜나가요

###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 ②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메인 배너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 ③ 최저임금 준수

'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우측 하단)

### ④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붙임2

# 4대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홍보자료

###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현장 애방점검의 날)

1. 근로계약서 서면 제시

2. 근로계약서 이행

3. 근로계약서 이행

4. 근로계약서 이행

5. 근로계약서 이행

6. 근로계약서 이행

7. 근로계약서 이행

8. 근로계약서 이행

9. 근로계약서 이행

10. 근로계약서 이행

11. 근로계약서 이행

12. 근로계약서 이행

13. 근로계약서 이행

14. 근로계약서 이행

15. 근로계약서 이행

<사업주들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 사업장 지도감독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 □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노무관리 가이드북

2023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3-3 임금명세서

주요 확인사항	구분	내용	일련번호
1	임금 지급	월급 지급액 확인(근로계약서와 비교)	41쪽
2	임금 지급	임금 지급액 확인(근로계약서와 비교)	41쪽

<주요 노동관계법에 대한 실용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 사업장 지도감독 → 노무관리 가이드북

### □ 노동관계법 「교육 동영상」

노동법 교육 자료

노동관계법 교육 동영상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 자료

# 4대 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것!**

1 근로계약서편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 임금명세서 is 필수

이런 달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알거나 일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한 기간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 최저임금 is 기본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0,580원

주 40시간(휴게시간 포함) 월 209시간(근로기준법 기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 임금 = 정당한 근로 대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급여,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거나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재의로 낸 봉사료 등)
- 호의적·은혜적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 4대 기초노동질서 「브로셔」

4대 기초노동질서와 관련된 임금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

365콜센터 1350

구분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노동부 02-2311-0009, 서울특별시청 02-3689-1154, 서울노동부지청 02-403-0000, 서울노동부지청 02-735-0000, 서울노동부지청 02-360-0000, 서울노동부지청 02-360-0000, 서울노동부지청 02-360-0000, 서울노동부지청 02-360-0000
부산	부산노동부지청 051-746-0000, 부산노동부지청 051-877-0009, 부산노동부지청 051-259-0004, 부산노동부지청 051-789-1500, 부산노동부지청 051-443-2300, 부산노동부지청 051-842-1152, 부산노동부지청 051-360-8611, 부산노동부지청 051-308-1902, 부산노동부지청 051-308-1902
대구	대구노동부지청 053-714-0000, 대구노동부지청 053-877-0009, 대구노동부지청 053-259-0004, 대구노동부지청 053-778-0000, 대구노동부지청 053-443-2300, 대구노동부지청 053-842-1152, 대구노동부지청 053-360-8611, 대구노동부지청 053-308-1902
대전	대전노동부지청 042-278-0000,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대전노동부지청 042-729-1111
광주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광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충청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충청노동부지청 041-891-5030
전남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남노동부지청 061-259-0004
전북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전북노동부지청 063-259-0004
제주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제주노동부지청 064-729-1111

근로계약서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가맹점·영업이 없는 경우)

본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함을 증명한다. (이하 "근로계약"이라 함)

1. 근로계약서: 년 월 일부터  
2. 근로계약서: 년 월 일부터  
3. 근로계약서: 년 월 일부터

2.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근로계약서, 단행명령 등

3.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단행명령 등

4.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근로계약서, 단행명령 등

5.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단행명령 등

6.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근로계약서, 단행명령 등

7.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단행명령 등

www.moel.go.kr

노동자의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 4대 기초노동질서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2 임금명세서 교부
- 3 최저임금 준수
- 4 임금체불 예방

구분	계산 방법	기준액(원)
연간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 × 1.5	3,962,771
연간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 × 1.5	486,610
연간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 × 1.5	3,472,161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2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 3 휴일
- 4 연차유급휴가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6 다중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단행명령(단행명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연락처 365콜센터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별첨)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별첨)

※ 단행명령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기간제 및 단행명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

### 2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사본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1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2 임금지급일
- 3 임금총액
- 4 (명칭, 야간,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임금시간수 포함된 계산방법
- 5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 6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 7 (임금공제액)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연락처 365콜센터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 단행명령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최저임금 준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76,940원(월 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연락처 365콜센터 |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유/무) | 연락처 365콜센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4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액과 공제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행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참고: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금+30일·사원일수×3695/이며, -평균임금 총액×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퇴직금 ☑️ 퇴직금계산기  
☑️ 나의 퇴직금 계산

임금체불 예방 365콜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신고하고, ☑️ 신고장 수제지 신청하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실에서 신고하세요.